

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17호
- 나. 제출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4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5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제3항, 제6조제6항, 제7조)
- 나. 조문의 주어인 “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”을 추가(안 제4조)
- 다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)
- 라. 조문 제목 및 인용 조항 변경(안 제6조)

마. 지원대상 사업 등에 “재향군인회 운영비” 추가(안 제6조제5호 신설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5조, 제6조, 제16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를 신설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“재향 군인회 운영비”를 추가하였음.
-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

[시행 2024. 1. 12.] [법률 제19524호, 2023. 7. 11., 일부개정]

**제5조(회원의 자격)**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6. 4., 2016. 5. 29.>

1. 육군·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
2.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
3.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·준사관(準士官)·부사관(副士官) 및 병(兵)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**제6조(조직)**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, 시·도회, 시·군·구회 및 읍·면·동회를 두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(職場支會)·연합분회(聯合分會)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,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·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
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·도회를 두며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시·군·구회를 두고,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회를 둔다. <개정 2013. 8. 13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**제16조(재정)**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

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삭제 <2016. 5. 29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